

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9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3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2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는 규정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출연 대상 :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
- 출연 필요성
 - 1)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
 - 2)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
 - 3)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,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

- ▶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, 2024 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 심의·의결
- 2024년 예산액
 - 1) 문화재단 총 예산액 : 금8,475,324천원
 - 2) 출연금 요구액 : 금7,503,541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,
- 출연의 필요성은
(재)금천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, 금천구 문화 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을 위하고자 함.
- 본 동의안의 의결 범위를 보면,
-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
- 본 출연 동의안은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